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562
----------	-----

제안년월일: 2023년 2월 28일
제안자: 환경수자원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광항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444호)과 이영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456호)을 일괄 심사한 결과,
-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 기본계획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제도 신설과 위원의 연임 가능 횟수를 축소하며, 온실가스 감축 시책과 지역사회 이행·확산과 관련하여 시장의 의무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 나. 조례 제정·개정·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 다. 위원장 체제 및 위원 수를 변경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 라. 녹색건축물 확대 및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마.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탄소중립이행 책임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28조 ~ 제30조 신설).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1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2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는 제2항에 따른 각종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시민의 책무)”를 “(시민·사업자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을 “법 제6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해 사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축목표 등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제8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9.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제9조제3항 중 “거쳐”를 “거친 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조례 제정·개정·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제10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례 등의 내용을 국가위원회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조례: 조례의 입법예고 시작일부터 3일 이내

2.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

③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를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을 “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식건”을 “학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두”를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또는 임시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⑩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관계”를 “법 제24조 및 관계”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녹색건축물의 확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활성화”를 “확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을 “확대를 위하여 제2항”으로 한다.

-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제도 및 관련 장비·장치 등의 개발·보급
2.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 지정 등 도심 자동차 운행 제한
3.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4.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5. 자동차 저공해 사업지원

제20조제1항 중 “작성”을 “축적·정비하고, 관련 자료를 매년 작성”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기후위기 적응 사업”을 “기후위기 적응대책”으로 한다.

제5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영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 중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를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0호 중 “실천연대”를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로 한다.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실천연대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연대가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기후환경본부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의 점검
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통계의 작성·제출
3.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4.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홍보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이행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는 것</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p> <p>6.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p> <p>7.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①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8.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 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9.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삭 제>

10.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안전성·에너지안보·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11. (생략)

5. (현행 제11호와 같음)

12.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말한다.

<삭 제>

13.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삭 제>

등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14.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5.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신 설>

제4조(시의 책무) ① ~ ② (생략)

<신 설>

<삭 제>

<삭 제>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4조(시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는 제2항에 따른 각종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추진을

③ ~ ⑤ (생략)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 ③ (생략)

<신설>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5조(시민·사업자의 책무) ① -----
----- 법 제67조제
1항-----

-----.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 경영을 통해 사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감축목표 등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 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신 설>

<신 설>

4. ~ 5. (생 략)

<신 설>

6. (생 략)

③ ~ ④ (생 략)

제9조(목표 및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① ~ ② (생 략)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7. ~ 8.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9.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10.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목표 및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거친 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

-----.

제9조의2(조례 제정·개정·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제10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례 등의 내용을 국가위원회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기후환경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생략)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략)

2.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조례: 조례의 입법 예고 시작일부터 3일 이내

2.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

③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현행과 같음)

2. ----- 의원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
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
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
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 ⑧ (생략)

⑨ 위원회 활동에 드는 비용은 예산
의 범위에서 활동비·수당·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제1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① 시
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 재정 운용
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시
장은 시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
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6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3. -----

----- 학식-----

⑥ -----
한 -----

-----.

⑦ ~ ⑧ (현행과 같음)

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또는
임시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서울특별시 위
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
----- 법 제24조 및 관계 -----

-----.

제15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

-----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시장은

<신 설>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시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적절하게 정비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 공회전 방지 관련 장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힘써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는 주·정차 등의 상태에서 공회전하지 않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 확대-----

-----.

③ ----- 확대를
위하여 제2항-----

-----.

제17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제도 및 관련 장비·장치 등의 개발·보급
2.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 지정 등 도심 자동차 운행 제한
3.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4.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5. 자동차 저공해 사업지원

<삭 제>

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장 기후위기 적응 사업

<신설>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삭제>

제20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

----- 측적·정비
하고, 관련 자료를 매년 작성-----

② (현행과 같음)

제5장 기후위기 적응대책

제22조의2(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영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

③ ~ ④ (생략)

제2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생략)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9. (생략)

10.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사무국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 증진 활동 지원

<신설>

<신설>

<신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9. (현행과 같음)

10. -----
----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

제28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실천연대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연대가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기후환경본부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의 점검

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통계의 작성·제출

3.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4.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홍보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이행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